

도로사업 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과업개요	추정용역비		평가 방법	용역 기간 (개월)
		전체	2023		
국도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교량개축 150m, 교차로 개선 1식	1,200	500	PQ	12

- ※ 1. 추정용역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시행
2. 기타 정부의 계획변경 및 교통수요 결과 등에 따라 사업계획(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변경·최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나.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일 전일(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 측량업,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5)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사업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한다.

라. 공동도급

- 1)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12.28.)에 따라 5개 업체 이하가 공동도급(단독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2) 설계용역 중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1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불허).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만 참여 가능

3.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18.1.4.)에 따릅니다.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은 2023.5.23.(화) ~ 6.7.(수)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www.molit.go.kr/irocm)에 게시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3.6.7.(수) 13:30 ~ 16:30

2)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본관 3층 교통안전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3) 제출서류 목록

가) 제출문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책자 2부(원본 1, 부분 1)

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책자 6부(원본 1, 부분 5)

라) 이동식 저장매체(CD 또는 USB)에 저장된 파일 1부

4) 유의사항

- 가) 제출 시한까지 직접 방문(우리 청 접수장소 기준)하여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이후 도착한 일체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나)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업무중복도’ (설계용역) 평가자료 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평가 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개별통보(충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대평가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라. 참여기술인은 본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 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증명서류는 본 공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사용언어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얻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교통안전팀(063-850-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에 관한 질의는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합니다.

2)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별도 회신문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질의는 2023.6.5.(월) 15:00까지 가능합니다.